

외교부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부교수, 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공고

외교부는 국립외교원에서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전임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5월 3일
국립외교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선발인원 (총 1명)

임용예정직위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간	근무예정 부서
전임교수요원 (부교수)	국제법 (섭외사법 제외)	1명	5년	국립외교원

※ 선발된 자는 5년 임기제 특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되며, 근무실적 등이 탁월할 경우 심의를 거쳐 임용기간 연장 또는 「국립외교원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정년까지 근무하는 특정직 공무원 전임교수요원(교수)으로 임용

2. 직무내용

- 전문분야 관련 학술·외교정책 연구, 발표 및 정부기관 자문
- 전문분야 관련 외교안보연구소 활동 주관
-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강의
- 기타 외교관 직무 교육과정 강의
- 전문분야 관련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킹 등 공공외교 활동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국립외교원법, 국립외교원법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공무원임용규칙

4.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20세 이상인 자 (2001.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연구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분야 : 국제법(섭외사법 제외) 1명 ※ 교육·연구 경력 산정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연구실적 (학위논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할 분야 관련 연구실적물 점수가 600점 이상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적물 점수 : 서서번역서 포함 서류점수 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발간,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사회과학인용색인(SCI)에 등재된 학술지 게재 연구논문, 기타 형태의 연구논문, 논문 형태 정책보고서 책자로 발간된 정책 보고서 학회 프로시딩(proceeding) 수록 논문으로 판단(서식 제3호 참고) ※ 요건 충족 기한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완료된 경우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제출시에 완료되지 않은 요건이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완료가 가능한 경우, 서류제출시 해당 요건 완료 예정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요건이 완료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완료가 예정된 요건 외 여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요건 완료 증빙자료 제출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심사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기초 및 전공 심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연구업적 및 교육경력 심의) 응시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의 수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적 평가로 연구업적을 심의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5배수 초과인 경우 연구업적에 대한 질적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 이하를 선발
- * 심의기준 : 연구실적의 우수성, 연구실적의 전공·정책 적합성, 연구능력의 창의성 및 발전가능성, 교육·훈련 경력의 전공·정책적합성
- ※ 불합격 기준 : 전체위원 6명 중 심의위원 3명 이상이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했거나, 심의위원 3명 이상이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나. 공개발표·면접(2차)

- 평가방법 : 공개발표 및 면접을 통해 평정요소에 대한 다각적 평가 실시
 - 공개발표 주제는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후 개별 통지 예정
 - 공개발표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공개발표 평가시 참고
- ※ 구체적 사항(주제, 진행방식, 일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개별 연락 예정
- 공개발표 평정요소: ① 발표능력, ② 학문적 우수성, ③ 전공영역 적합성, ④ 정책연구에의 기여가능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강의·연구 계획의 적합성
- ※ 불합격 기준 : 전체 위원 중 위원의 4명 이상이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 4명 이상이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연구업적 50%, 공개발표 30%, 교육경력 10%, 면접 10%로 종합한 결과에 따라 적격자 중 최고득점을 합격자로 선정
 - ※ 1단계 서류심의에서 연구업적과 교육경력을 심의, 2단계에서 공개발표·면접 실시
- 최종합격 예정자의 학력, 경력 등을 검증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기타 사정으로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선발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채용절차 실시

6. 시험 일정

- 공고 : 2021.5.3.(월) ~ 2021.5.17.(월)
- 원서접수 : 2021.5.12.(수) ~ 2021.5.18.(화)
- 서류심의(1차)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1.6.14.(월)
- 공개발표·면접시험(2차) 예정일 : 2021.6.23.(수) ~ 2021.6.28.(월)
 - ※ 공개발표·면접시험의 구체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 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 : 2021.7.14.(수)
 - ※ 각 시험단계별 상세일정 및 합격자 명단은 외교부·국립외교원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에 공고 예정
-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

7.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비 고
응시원서 (별지서식 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채용지원서 (별지서식 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관련분야 경력은 증명 가능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 지참 가능
교육·연구 경력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지원서(별지서식 2호)에 기입한 경력사항 증명서 - 담당할 분야 관련 교육연구 경력 증명서 ○ 근무기간(연 · 월 · 일) · 직위(급)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u>미제출시 경력 불인정</u> ○ 증명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 및 회사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는 하단에 별도 수기로 기재 필요)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 증명서의 담당 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 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첨부 필요
연구실적 목록 (별지서식 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적물의 제목, 발표년월일 등 상세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서(번역서 포함,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발간) 및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사회과학인용색인(SCI)에 등재된 학술지 게재 연구논문, 기타 형태의 연구논문, 논문 형태 정책보고서, 책자로 발간된 정책보고서, 학회 프로시딩(proceeding) 수록 논문 등 ※ 응시 최소요건(600점) 이상의 연구실적물 목록 제출 필요

제출 서류	비 고
연구실적물 요약 (별지서식 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가 목록을 제출한 각 연구실적물의 요약 ※ 목록을 제출한 각 연구실적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별지서식 3호에 기재한 순서대로 제목의 (괄호) 안에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 학위논문: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 제출 필요(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기타 연구실적물: 표지, 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대표 연구실적물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가 목록을 제출한 연구실적물 중 응시 자격 요건(600점)에 해당하는 대표 연구실적물의 사본 ※ 연구실적 총합이 최소요건(600점) 이상일 경우, 600점 상당의 대표 연구실적물만 선정하여 사본 제출(양면인쇄 금지) ※ A4용지에 인쇄하여 집계로 고정 후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용지 2매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발표·면접시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연구·강의 계획서 (별지서식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용지 5매 이내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발표·면접시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필 서명하여 제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필 서명하여 제출
주민등록 초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대표 연구실적물 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하여 클립이나 집계 1개로 고정**한 후, **대표 연구실적물 사본과 동봉**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양면인쇄 금지)

-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및 연구실적물을 제외한 학력 및 경력(재직) 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단, 사본을 제출했던 서류전형 합격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거나 담당자의 원본 대조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단, 불합격자에 한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 반환 가능)
- **서류 제출 시에는 완료되지 않은 요건이지만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완료가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 시 해당 요건 완료 예정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는 요건이 완료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5.12.(수) ~ 5.18.(화), 09:00~18:00(도착일 기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 접수처 :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 (채용담당자 앞)
 (우)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국립외교원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가급적 등기우편 접수 요망
 - 방문접수시 국립외교원 정문에서 기획협력과(3497-7645)로 연락 요망
 - 출입 및 접수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평일 9:00 ~ 18:00 (12:00 ~ 13:00 제외) 중에만 접수 가능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문자로 통지 예정
 -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연락 불능, 도착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 미비 등 상황 발생시,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특히, 채용 담당과에서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응시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접촉이 불가능하거나 회신에 불응하는 경우,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문의전화 : 02 - 3497 - 7645

9. 신분 및 대우

- 특정직 공무원 (5년 임기제, 부교수)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임용 직위에 해당하는 연봉 및 수당 지급

10. 유의 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0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기타 사정으로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선발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채용절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등) 중 1종 및 근무 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제출한 연구·강의계획서 및 연구실적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표절정도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02-3497-7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국립외교원장 귀하

※ 응시번호	* 서류접수 완료 후 응시번호를 문자(SMS)로 송부 예정		성명 (한글) (한자)
응시직급 (응시분야)	전임교수요원() ()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불이는 곳 (10,000원)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전화: 휴대전화:		



응 시 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채용시험

※ 응시번호	* 서류접수 완료 후 응시번호를 문자(SMS)로 송부 예정		응시직급 (응시분야)	전임교수요원() ()
성명	(한글)		(한자)	
2021년 월 일				
국립외교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에는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접수 완료후 휴대전화 문자
(SMS) 송부 예정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전임교수요원(부교수), 전임교수요원(조교수)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1만원 상당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서식 제2호)

외교부 국립외교원 2021년도
전임교수요원 채용지원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문자(SMS) 송부 예정	응시 분야	국립외교원 부교수 (국제법)	성명
----------	--------------------	----------	--------------------	----

나. 응시자격 (해당사항만 기재)

학 위			기 간	학부(과)	전 공	학위명
	입학 년월일	졸업 년월일				
학 사	학사					
	석사					
	박사					
硕 士 学 位 名 稱	硕 士 学 位 名 稱			지도교수	硕 士 学 位 名 稱	(소속, 직, 성명 순으로 기재)
	硕 士 学 位 名 稱				硕 士 学 位 名 稱	(소속, 직, 성명 순으로 기재)
	硕 士 学 位 名 稱				硕 士 学 位 名 稱	(소속, 직, 성명 순으로 기재)
	硕 士 学 位 名 稱				硕 士 学 位 名 稱	(소속, 직, 성명 순으로 기재)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 학위를 받지 못한 경우 재학기간을 "기간"란에 기재 / "학위명"란에 재학, 수료 등으로 기재

※ 교육·연구 경력 증명서를 별도 첨부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연 구 실 적	※ 별지서식 3호 및 4호에 기재			

※ '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강회방안'에 따라 응시자가 기재한 성명, 생년월일, 지도교수명 및 응시번호는
서류면접 심사 위원에게 절대 제공하지 않으며, △면접/서류심의위원 위촉, △추후 합격자 결정시 자격
요건 충족여부 확인 △진위여부 확인시에만 활용할 예정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연구실적물 목록

총괄 연구업적 현황 ①(편), ②(편), ③(편), ④(편), ⑤(편), ⑥(편), ⑦(편)					
제 목	발 표 년월일	발표지 및 인터넷 주소	분류	공동연구 인원	본인 확인
					(인)

- * 1. 응시자의 연구업적을 기재 / 접수시에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완료가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 시 해당 요건 완료 예정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요건이 완료된 증빙자료 제시 필요
- 2. 연구업적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발표지 및 인터넷 주소"를 기재
- 3. "분류"란은 총괄연구업적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올바른 번호를 기재

연구실적물 종류	번호	연구실적물 종류	번호
저서(번역서 포함)	①	기타 형태의 연구논문	④
박사학위논문		논문 형태의 정책보고서	⑤
석사학위논문	책자로 발간된 정책보고서	⑥	
SSCI 등재 연구논문	③	학회 프로시딩 수록 논문	⑦

- ① 저서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초판으로서 전공분야의 학술전문저서 및 대학 이상의 강의를 위한 전공분야 교과서에 한하여 인정
- ② (박사학위논문), ③(석사학위논문), ④(SSCI 등재 연구논문) :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 이 논문 체제를 갖춘 것이어야 하며, 서평·논평 등은 불인정
- ④ 기타 형태의 연구논문 : 국내외 저명학술지·대학논문집·단행본 중에서 논문의 형태로 발표된 것이어야 하고 (개재 확정된 논문 포함), 교양잡지·일간지·교내신문에 발표된 논문 또는 발표 형식을 불문하고 심사 중인 논문은 불인정
- ⑤ 논문 형태의 정책보고서 :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를 부여받은 보고서로서 국가정책에 관련된 연구 실적물을 의미
- ⑥ 책자로 발간된 정책보고서 : 10페이지 이상의 책자로서 공공간행물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되거나 발간기관이 식별의 목적으로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국가정책에 관련된 연구실적물을 의미
- ⑦ 학회 프로시딩(proceeding) :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논문을 수록한 단행본 형식의 자료집(전자자료집 포함)을 의미
- 4. "공동연구 인원"란은 저자수에 따라 "1인", "2인", "3인", 또는 "4인 이상" 중 하나로 기재

연구실적물 요약 - (1)

제 목	발 표 년월일	발표지 및 인터넷 주소	분류	공동연구 인원	본인 확인
					(인)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요 약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매 쪽마다 쪽번호를 부여하고,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을 기재하십시오.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서식 제4호)

연구실적물 요약 - (2)

제 목	발 표 년월일	발표지 및 인터넷 주소	분류	공동연구 인원	본인 확인
					(인)

요 약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매 쪽마다 쪽번호를 부여하고,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을 기재하십시오.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서식 제4호)

연구실적물 요약 - (3)

제 목	발 표 년월일	발표지 및 인터넷 주소	분류	공동연구 인원	본인 확인
					(인)

요 약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매 쪽마다 쪽번호를 부여하고,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을 기재하십시오.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채 용 분 야	
-----	--	---------	--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매 쪽마다 쪽번호를 부여하고,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을 기재하십시오.

*** (유의사항) 작성시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구 · 강 의 계 획 서

<p>* A4용지 5매 내외로 작성</p> <p>-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매 쪽마다 쪽번호를 부여하고,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을 기재하십시오.</p> <p>* (유의사항) 작성시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p>
2021. . . 작성자 : (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국립외교원에서 시행하는 임기제 전임교수요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 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외교원장 귀하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국립외교원 및 외교부는 임기제 전임교수요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관련 자료 수집 등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임용예정 분야 직무기술서

분야	배치가능 부서	직급	임용예정 인원
국제 법 (섭외사법 제외)	외교부 국립외교원	전임 교수요원(부교수)	1명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분야 연구, 외교정책 제안 ■ 관련 분야 학술·외교정책 연구 및 발표 ■ 정부기관 자문, 국내외 관련분야 전문가 네트워킹 ■ 관련 분야 연구원 활동 주관 ■ 국립외교원 외교관 후보자대상 정규과정 관련 분야 과목 강의 ■ 외교관 직무 교육과정에서 관련 분야 과목 강의 ■ 언론활동 및 외부 특강 등 공공외교 활동
-------	--

필요 역량 (NSC: 국가직무능력표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공통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전문성, 전략적사고력, 분석력, 창의력, 강의능력
---------------------------	---

전문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법분야의 이론 및 실제와 관련된 지식 ○ 양·다자 조약 관련 지식 ○ 국제관계 관련 지식
-------	--

응시자격 요건	관련분야 : 국제법(섭외사법 제외)	
	교육·연구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연구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연구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구실적을 점수가 600점 이상인 사람
참고사항	<p>※ 단계별 전형시 아래의 사항 등을 평가에 참고할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분야와 학위간 적정성 ○ 영어 구사력 	